
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

1 질의

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지매입시 농지소유자에게 영농보상 가능 여부

2 회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호에 의하면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· 공장 · 연구소 · 시험소 · 보건 또는 문화시설 · 공원 · 수목원 · 광장 · 운동장 · 시장 · 묘지 · 화장장 ·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사업은 위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,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건립 일환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며, 영농보상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나,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위법 적용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·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. [2011.04.01. 토지정책과-154]